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 Transfer Pricing Tax Reporting Compliance Requirements in Indonesia](#)

2016 년 12 월 30 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재무장관령 제 213 호 / PMK.03 / 2016 ("PMK-213")을 발의하여 즉시 이 안을 시행하였습니다.

PMK-213은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3가지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i. 다국적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기업보고서 ("MF");
- ii.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기업보고서 ("LF"); 그리고
- iii. 다국적기업의 각 회사들에 대한 세부적 재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별보고서 ("CBCR")

MF와 LF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후 과세당국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영어로 기장을 허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어 번역도 함께 제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27 February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MF와 LF 구비대상 기준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MF와 LF는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래 기준 해당 납세자:

1. 전년도(이 경우 2015년) 특수관계자거래 및 해당 총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IDR, 원화로 약 45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관계자거래의 총액에 대한 기준점은 없음; **또는**
2. 당해년도(이 경우 2016년) 특수관계자 재화거래(재화의 판매 및 구매, 재료 등)가 200억 루피아(IDR, 원화로 약 18억원)인 경우; **또는**
3. 당해년도(이 경우 2016년) 특수관계자 용역거래(이자, 로열티 및 용역)가 50억 루피아(IDR, 원화로 약 4억 5천만원)인 경우; **또는**
4.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인도네시아(현재 25%)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 조항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얼마나 소규모인지 등에 대한 기준점은 없으므로 **모든**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가 목록은 Indonesian Tax Office ("ITO")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법인세율 22%로 요건 충족함)

CBCR 구비대상 기준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기준점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CBCR은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부 설명은 이 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1. 인도네시아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연결회계기준 총매출액이 11조 루피아(IDR, 미화로 약 8억 천 4백만불)인 경우; **또는**
2. 해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 i. CBC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 ii. 인도네시아와 정보교류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거나,
 - iii. ITO가 정보교류협정을 통해 CCR을 얻지 못할 경우

ITO는 인도네시아와 적합한 정보교류협정을 맺은 국가목록을 발행하였습니다.

PMK 213은 CBCR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정보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위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016 년 법인세 신고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내에 MF / LF (CBCR은 12개월 이내) 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MF/LF는 연간 법인세 신고서 (“CITR”)에 요약하여 첨부하고, CBCR은 차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CBCR의 경우, 상기 내용대로 사업연도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차년도 4월 말 법인세 신고 시에도 재첨부)

요청이 있을 때 MF/LF를 준비 및 제출하지 못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MF/LF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3조(3)에 의거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TO는 준법, 세무조사, 이의, 행정조치의 감면 및 기타 경우에 위의 문서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유효 시점	2016 년 12 월 30 일 (2016 년에 종료된 사업연도)
언어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인도네시아어 번역 보완 제출)
제출 기한	MF & LF: 사업연도 종료 후 4 개월 내 구비 CBCR: 사업연도 종료 후 12 개월 내 제출
해당되는 특수관계자 거래	모든 국내/국제 거래
세무당국제출	MF & LF: 구비 사실에 대해 서명하여 법인세 신고서(CITR)에 첨부. CBCR: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ITO 에 제출.
처벌 및 제재	현재 규정에 따름.
서류 보존 연한	10 년
부분연도 연간환산	해당
환율	과세 연도 말 인니 재무부 고시 환율
연장	연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연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Back to top](#)

[Spanish Plan Aims At Avoidance by Multinationals](#)

스페인 정부의 2017 년 세금 관리 계획 (Tax Control Plan)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BEPS 준수 모니터링, 온라인 거래 추적 및 부가가치세 납세 모니터링에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더 많은 납세자 데이터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갖춘 조세국은 Uber Technologies, Airbnb Inc., Cabify SA 및 Ridesharing 플랫폼 기업인 BlaBlaCar (Comuto, SA) 등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회사를 상기 모니터링 타겟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1월27일, 마드리드의 쿠아트레카사스, 곤칼베스 페레이라(Cuatrecasas, Goncalves Pereira) 법률 자문사의 국제조세 파트너인 Antonio Barba가 Bloomberg BNA에 밝혔습니다.

스페인 조세국(AEAT)에 따르면, 국제 정보 교환과 컴퓨터 기술 사용의 비약적 향상은 세무조사관들이 조세회피 위험을 분석하고 2017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Barba는 이번 계획이 과거에 비해 확실히 더 새로워졌으며, 모든 납세자들에게 스페인 당국이 다른 국세청들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음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arba는 “이것이 바로 납세자들에 대한 빅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지하경제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AEAT는 1월 26일 성명을 통해, 부가세 관련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규제를 확인하는 한편, 무신고 매출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한 조세국의 직접 방문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자동 부가세 정보제공 시스템이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6백만 유로(6.4백만 미 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BEPS 준수

AEAT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OECD의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위험 영역에서의 조세회피 관행을 바로 잡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사관이 악의적인 이전가격 책정, 인위적인 금융비용 생성, 조세 피난처 거주자를 통한 운영, 공격적인 조세전략 구조, 해외에서 다른 방식의 납세(조세회피 및 절세)를 피하기 위해 만든 신종 구조, 소득을 비거주자 기업에서 스페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귀속하는 행위 등을 분석하겠다는 뜻입니다.

AEAT는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이행이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세국이 위험분석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rba는 BEPS 준수가 2017년의 “중점사안” 및 “절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AEAT는 2017년 대형 외국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바일 결제,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수단으로 결제된 수입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AEAT는,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결정이 BEPS 프로젝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1월 26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영업이 종료되는 시점(사업 연도 종료)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 등 가까운 시일 내에도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보고되지 않은 대규모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AEAT는OECD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덕분에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인 CRS를 통해 2017 년 말 경에는 54 개국의 계좌 정보에, 2018 년부터는 추가로 47 개 이상의 조세관할권내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갖춘 AEAT는 공격적인 재정계획과 거대한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개 기업 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Back to top](#)

[Australia Set to Introduce Google Tax Bill Early February](#)

호주 정부는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법안의 초안에 대해 주요 이해 집단과 개별적으로 상의한 뒤 다음 주 중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5 월, 구글 등 호주로부터 인위적으로 이익을 우회시킨 대형 다국적 기업에 40 %의 페널티 세율(일반 법인세율 30%)을 적용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정부 공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1 월 공개 의견을 위한 초안을 발표 한 뒤 재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선정된 이익 단체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우회이익세 법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소식통은 법률의 주요 사항들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Bloomberg BNA에 전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전세계 수입이 10 억 호주 달러 (원화로 약 8,750억원) 이상이고 호주 총 수입이 2,500 만 호주 달러 (원화로 약 220억원) 이상인 대형 다국적 기업인 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납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피하고 "타당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 절차 또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증가금액이 호주 납세의무액 감소분의 80%이거나 그보다 상회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테스트에서 "타당한 외국납부세액"으로 판정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영국의 "구글세"에 영향을 받은 이 법안은,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이전가격 규정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Bloomberg BNA에 "정책 입법 및 정책 입안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밀 협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소식통들은 Bloomberg BNA에 정부가 2 월 7 일 시작되는 첫 회기에서 법안과 상세한 법안 주석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실 납세 조치인 이 우회이익세 법안을 법인세율 삭감안의 강화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세력균형(power of balance)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들의 시각에 따르면,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법안은 적대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제도 및 변경 제도에 대해 2017년 7월1일 이후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초안에 대한 법안 주석에 따르면 우회이익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조직(associate)에 이익을 우회시킨 납세자를 상대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호주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게 제공
- 대형 다국적 기업의 합리적인 이전가격 책정을 포함한 조세 의무 이행 준수를 장려
- 정보 불균형 해결책 마련
-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조항 대비 신속한 분쟁 해결
- 호주 국내외의 다국적 기업이 호주국세청에 보다 투명하고 협조적일 수 있도록 장려

[Back to top](#)

[India: Transfer pricing proposals in budget 2017](#)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1일 처음으로 재정 및 철도 예산을 통합하여 2017-18 회계 연도 시작부터 모든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재무부 법안은 이전가격(TP)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관계자거래는 내국 TP조항에서 제외

납세자에 의해 내국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예를 들어 납세법인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사회 법인에 대한 지급 비용)에 대해 다루던 1961년 인도 소득세법(세법)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내국 TP조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어떤 종류이든 이익과 관련하여 세금혜택을 보게 되는 특수관계자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세금에 영향이 없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16~17년 사업연도 이후부터 TP 조항의 범위 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 조정

2017년 재무부 법안은 TP조정에 2차 조정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가격에 1차 조정을 한 경우 2차 조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 세금 신고시 납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 과세부과 과정 중 세무조사관(Assessing Officer)에 의해서 이뤄지고,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 납세자가 맺은 이전가격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에 의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
- 조사면제규정에 의해 조정이 된 경우; 또는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한 과세 부과 해결 결과로서 조정이 이뤄진 경우

'2차 조정'은 납세자 및 관계사 간의 실제 수익의 분배가 1차 조정(다시 말해, 결정될 수 있는 정상가격에 의거한 조정)의 결과로서 정해진 이전가격과 일치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납세자 및 관계사의 장부에서의 조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차 조정'이라는 용어는 국제 관행에 근거한 일반적 용어로서, 관계사에 부과한 이전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과세 이익의 증가, 또는 손실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관계사로부터 해당 미수금만큼을 수취하여 거주지국에 (이 경우에는 인도를 뜻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 미수금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2차 조정에 따른 간주대여로서, 관계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에 대한 명목이자 역시 납세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7년 재무부 법안에서 소개된 예산안에 따라, 이전가격 또는 1차 조정이 1천만 루피(INR, 원화로 약 1억 7000만원)를 초과하고 해당

금액이 명시된 기한 내에 송금되지 않으면 상기 설명된 명목상의 이자가 인도 납세자에게 과세되게 됩니다.

납세자가 관계사에게 납부하는 금액 중 선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 방식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2016~17년도 및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과소자본제도의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행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실행방안 4 (Action Plan 4)에서 제안되고 있듯이 2017년도 재무부 법안은 과소자본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회사 또는 인도에 있는 외국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차입자로서 비거주 관계사로부터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차입 또는 보증 받은 것과 관련하여 1천만 루피(INR, 원화로 약 1억 7000만원)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초과이자비용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사업 또는 전문 직업으로부터의 손익 또는 이익' 항목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초과이자란 납세자가 현금 이익 또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를 지급하기 전 소득(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이자와 관계사에게 직전연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이자 중 더 적은 것을 뜻합니다.

납세자가 특정 회계연도에 이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위에 설명된 초과분만큼에 한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8년동안 이월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제한 사항은 은행업이나 보험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7~18년도 및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

세법(the Act)의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관(AO) 또는 소득세국(Appeals)이 회계사, 상업은행 또는 감정평가사가 발행한 보고서 또는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 잘못된 정보 제공 건 당 1만 루피(INR, 원화로 약 17만원)의

벌금을 회계사, 상업은행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부과하는 새 조항이 제안되었습니다.

과세 부과 완료 기한

세법(the Act) 143조 또는 144조에 따라 2018~19년 사업연도의 과세 부과 명령 기한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19~20년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해당 부과 기한은 소득이 최초로 과세될 수 있는 사업연도의 종료시점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